

바른 交通政策 事業을 빠르게 推進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2個의 計定을 統合 運營하고 交通政策의 優先順位에 따라 豫算을 適正 配分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으며, 한편 그 동안 一般會計에서 警察廳 支援豫算을 編成, 運營함으로써 해서 交通局長의 統制權 밖에서 豫算이 編成, 執行되었던 것이 交通事業特別會計에 編成됨으로 해서 警察廳 支援豫算의 編成과 執行에 있어서 보다 效率의인 業務統制가 可能하다는 結論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本 條例案은 우리 交通委員會에서 별다른 意見이 없이 議決되어 오늘 本會議에 上程된 만큼 議員 여러분께서도 交通委員會가 議決한 대로 滿場一致로 可決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交通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를 “교통관리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4. '93.7.31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92.12.31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제3호중 '96.1.1이후 징수분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정부의 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기타 수입금

②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교통국 및 교통관리사업소의 인건비·경상적 경비

2.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3.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17. 生活下水및糞尿污泥케익의再活用に關한建議案(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長 提案)

(16時 4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7項 生活下水및糞尿污泥케익의再活用に關한建議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黃好淳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好淳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치국민회의 所屬 黃好淳議員입니다.

本議員이 發議한 生活下水 및 糞尿污泥케익 再活用に 關한 對政府 建議案을 提案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主要骨子は, 서울特別市 中浪, 炭川, 加陽, 蘭芝 4個 下水處理事業所에서 배출되는 오니케익은 93年 45萬톤, 94年 47萬톤, 95年 현재 59萬톤이 發生되어 2次 環境汚染인 악취와 해충발생 등으로 下水處理場 周邊住民의 集團民願 發生問題나 金浦 쓰레기埋立場의 埋立 問題點 등을 解消하기 위하여 中央政府와 서울特別市長에게 本 建議案을 提案하게 되었